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581
----------	-------

발의연월일 : 2026. 8. 13.

발 의 자 : 이정문 · 문진석 · 박정현
정태호 · 조계원 · 박선원
박홍배 · 송옥주 · 정준호
여기구 · 주철현 · 모경중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퇴직공직자를 매개로 한 부정한 청탁 등의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을 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는 막대한 국가 재정이 투입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지도·감독을 받는 등 공직자와의 업무관련성이 충분함에도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포함돼 있지 않아 퇴직공직자의 재취업에 관한 제도적 관리가 부재한 상황임.

이에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이들에 가맹된 회원종목단체를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포함시켜 체육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낙하산 인사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13호 신설).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같은 법에 따라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회원종목단체. 이 경우 그 규모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1. ~ 12. (생략) <u><신설></u> ② ~ ⑨ (생략)	----- ----- -----. 1. ~ 12. (현행과 같음) 13.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u>에 따른 대한체육회, 같은</u> <u>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u> <u>인체육회 및 같은 법에 따라</u> <u>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u> <u>체육회에 가맹된 회원종목단</u> <u>체. 이 경우 그 규모 및 범</u> <u>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② ~ ⑨ (현행과 같음)
--	---